

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제1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,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.
- 마. 처분권자는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(업무정지만 해당한다)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을 받은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	
나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 한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2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다. 지정기준에 적합하 지 않게 된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3호	경고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지정취소